

Deloitte.

세무 및 관세 뉴스

2023년 3월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989

주목할 만한 내용:

조세관리

- 2023년 세무조사/감사 강화

법인소득세 ("CIT")

- 자본금 증자 없이 사업부문을 추가하면 CIT 인센티브 적용 불가
- 수출수익은 통관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인식됨
- Production norm을 초과하는 원자재 비용이 손금불산입됨
- 베트남에 합법적인 사업장이 없는 2개의 외국 회사 간의 자본이전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

무역 및 관세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TIGA) 원산지 규정 개정
- 반덤핑 관세는 중국산 일부 가구 (테이블 및 의자 제품)에 공식 적용
- 베트남 상공회의소 ("VCCI")는 2023년 1월 1일부터 렉스 코드 등록을 처리함
- C/O 양식 B는 HS 버전 2027에 따라 여전히 발행되어 있음

간접세 ("VAT")

- 부가가치세 ("VAT")에 대한 제 49/2022/NĐ-CP 호 시행령을 안내하는 시행규칙
- 본사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반시설 투자프로젝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VAT 신고

노동

- 중병환자에 대한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 신청

개인소득세 ("PIT")

- 협력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에 대한 PIT 원천징수
- 지점 및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에 PIT 신고 및 분배

외국인계약자세 ("FCWT")

- 증권양도소득에 대한 FCWT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조세관리

기타

2023년 세무조사/감사 강화

세무총국은 2023년 3월 1일에 2023년의 세무조사/감사 강화와 관련하여 세무국에 안내를 위해 제 586/TCT-TTKT 호 공문 (" 제 586/TCT-TTKT 호 공문 ")를 발행했다. 따라서 세무총국은 지방 세무국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 2023년 4월 29일까지 2022년 세무조사/감사 계획을 완료하고 2023년 세무조사/감사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한다.
- **세무조사/감사에 위험관리 적용:** 세무당국 및 기타 제3자의 정보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무위험을 분석하고 중점적으로 다룰 위험 영역을 결정한다.
- **세무조사/감사의 효율성 향상방안 적용:** 납세자와 전자적 방식을 통한 정보 교환 강화; 규정에 따른 전자일기 기록; 세무조사팀의 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 세무조사/감사를 통해 부과된 세금 및 과태료를 적시에 징수.

- **다음 분야에 세무조사/감사 강화:** 전자 상거래, 디지털 비즈니스 및 송장 분야.
- **부가가치세 ("VAT") 환급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고위험 서류의 경우 환급 후 01년 이내에 세무조사/감사 실시, 해당 연도의 감사전 환급 받은 경우의 서류 및 전년도의 환급 서류 검토.
-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감사 강화:** 손실이 발생하거나 같은 구역에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보다 사업 결과가 낮고 FDI, 이전가격 거래의 비중이 높고 세금 인센티브를 적용 받은 기업, 가공, 계약 제조, 전자 부품, 섬유, 신발 등의 조립과 같은 단순한 경영활동을 운영하지만 수익 수준이 낮은 기업;
- 탈세, 세금 사기, 세금 범죄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 조사/감사에 관할 당국과의 협력 강화.

(2023년 3월 1일 세무총국의 제 586/TCT-TTKT 호 01)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세 (“CIT”)

지침 문서



자본금 증자 없이 사업부문을 추가하면 CIT 인센티브 적용 불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고 있는 기업은 사업부문을 추가 등록하지만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산증가를 위해 투자확장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추가 사업부문으로 인한 수익은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3월 3일 제 4229/CTBDU-TTHT호 OL)

Production norm을 초과하는 원자재 비용이 손금불산입됨

정부에 의해 규정된 표준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자재, 연료, 에너지 및 물품에 대한 비용은 CIT 목적상 공제한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업에서 통관 후 감사를 실시한 후, 수출입서류, 결제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의 데이터와 실제 재고 원부자재수량간에 차이가 있어 관세당국이 수입관세 및 VAT를 부과할 경우 표준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자재의 가치가 규정에 따라 CIT 상 공제 불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3월 3일 제 4228/CTBDU-TTHT 호 OL)

수출수익은 통관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인식됨

기업이 2022년 11월에 물품을 수출 신고 하였지만 2023년 2월까지야 통관절차를 마쳤을 경우 VAT 신고 시점 및 수출수익 인식시점은 통관절차 완료일로 (즉, 통관일) 한다.

과세소득이 2023년에 인식되면 해당 판매비용을 2023년에 회계처리해야 한다. 과세수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용은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30점에 따라 CIT 목적상 공제 불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Thai Nguyen 세무국의 2023년 3월 8일 제 912/CTTNG-TTHT호 OL)

베트남에 합법적인 사업장이 없는 2개의 외국 회사 간의 자본이전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

제 78/2014/TT-BTC 호 시행규칙 제14.2.c조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외국인 회사인 경우, 외국인 모회사에 의해 투자된 베트남 회사가 외국인 모회사를 대신하여 CIT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 회사가 자본이전거래에 관한 제105/2020/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위해 세금 코드를 발급 받을 대상이 아니다.

(세무총국의 2023년 1월 6일 제 32/TCT-KK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신규 규정

부가가치세 (“VAT”)에 대한 제 49/2022/ND-CP 호 시행령을 안내하는 시행규칙

재무부가 2023년 2월 28일에 VAT에 대한 2022년 7월 29일 제 49/2022/ND-CP 호 시행령의 시행을 안내하는 제 13/2023/TT-BTC호 시행규칙 (“제 13호 시행규칙”)을 발행했다.

제13호 시행규칙에 포함된 3개의 조항은 제 49/2022/ND-CP호 시행령의 변경 사항을 제 219/2013/TT-BTC호 시행규칙을 통해 다시 안내한다. (예: 베트남 전기 그룹의 전력 생산 활동에 대한 과세가격, 부동산 양도 또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제13호 시행규칙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지만, 조건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변경은 2016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VAT, 연체이자 및 과태료 (있으면)에 대한 조정이 다음과 같다:

- VAT 환급금 회수, 연체이자 및 과태료 (있으면) 부과결정이 발행된 경우, 세무당국은 이 결정에 대한 조정 결정을 발행해야 한다. 납세자가 회수된 VAT 금액을 추가로 신고할 경우, 납세자 및 세무당국은 회수된 VAT 금액과 연체 이자를 조정해야 한다.
- 회수된 VAT 금액 (업체의 생산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미지급 VAT 금액과 아직 상계되지 않거나 상계된 경우 포함), 납부된 연체이자 및 과태료 (있으면)는 초과납부 세금 환급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급한다.

(재무부의 2023년 2월 28일 제 13/2023/TT-BTC호 시행규칙)

지침 문서

본사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반시설 투자프로젝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VAT 신고

본사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반시설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한 업체는 부동산 양도가 있는 지방의 세무국에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의 부록 II, 제 01/GTGT호 양식으로 기반 시설 투자 프로젝트의 VAT를 신고해야 한다.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업체가 상기 언급한 다른 지방의 부동산 양도활동을 제외하여 Form 01/GTGT로 VAT 신고한다.

(Ha Noi 세무국의 2023년 2월 27일 제 7969/CTHN-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노동 지침 문서

중병환자에 대한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 신청

사회보험법 제60조 1항 c항에 기술된 중병에 대한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 암, 소아마비, 간경변증, 나병, 중증 결핵, 에이즈로 진행된 HIV 감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중 하나인 경우 신청서는 병원 퇴원 서류의 원본 또는 유효한 사본 또는 위에서 언급한 질병을 보여주는 의료 기록 요약본이다.
- 기타 질병의 경우: 서류는 업무능력이 81% 이상으로 감소한 질병으로 자가 제어가 불가능하거나 도움이나 돌볼 사람이 없이는 자기가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명확한 결론을 기술하는 의학적 평가기록이다.

(호치민 보험사회당국의 2023년 3월 6일 제791/BHXXH-CD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협력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에 대한 PIT 원천징수

회사가 협력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이 보너스가 급여 또는 임금성격이고 협력자가 노동계약이 없거나 3개월 미만인 노동계약이 있으면 회사가 규정에 따라 PIT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사가 협력자에게 현금을 선물로 하는 경우 현금 선물로 인한 소득은 규정에 따라 PIT가 부과되지 않다.

협력자에 대한 급여 지급, 현금 선물 비용은 제96/2015/TT-BTC호 시행 규칙 제 4조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회계 목적상 인식될 수 있지만 회사가 협력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이 회계 목적상 인식되지 않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2월 13일 제4985/CTHN-TTHT호 OL)

지점 및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에 PIT 신고 및 분배

여러 지방에 지점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본점집중회계 처리하는 경우 PIT를 신고하고 계산하여 지점,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에 분배해야 한다.

각 지방에 분배 PIT 금액은 각 근로자로 부터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자가 파견되거나 이직된 경우 소득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PIT를 계산하여 분배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2월 9일 제4418/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증권양도소득에 대한 FCWT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계약자가 증권 법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에서 증권 양도 소득의 경우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FCWT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 VAT: 증권 양도 활동에는 VAT가 부과되지 않음
- CIT: 증권 양도 활동에는 CIT 0.1%가 적용됨

외국인계약자가 제103/2014/TT-BTC호 시행령 8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직접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 당사자 (증권 회사, 증권 발행인 또는 외국 회사가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회사)는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외국인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 & 납부할 책임이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3월 6일 제9302/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Trade & Customs”)

신규 규정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TIGA) 원산지 규정 개정

2023년 2월 14일에 산업통상부는 ATIG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제22/2016/TT-BCT호 시행규칙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제03/2023/TT-BCT호 시행규칙을 공표하였다. 주목할 만한 수정이 다음과 같다:

- 제품별 규칙 업데이트
- 섬유 제품의 기본 환산 기준
- 정보 기술 제품 (ITA) 목록

상기 언급한 수정은 조화 상품 설명 및 코딩 시스템 2022 버전 (HS 2022)에 따라 작성되었다.

(산업통상부의 2023년 2월 14일 제03/2023/TT-BCT호 시행 규칙)

반덤핑 관세는 중국산 일부 가구 (테이블 및 의자 제품)에 공식 적용

2023년 2월 13일에 산업통상부는 중국산 테이블 및 의자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공식적으로 부과하고 말레이시아산 테이블 및 의자제품에 반덤핑 조사를 중단하는 제235/QD-BCT호 결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산 테이블 및 의자 제품은 HS 코드 9403.30.00의 테이블 및 HS 코드 9401.31.00, 9401.39.00, 9401.41.00, 9401.49.00, 9401.61.00, 9401.69.90, 9401.71.00, 9401.79.90, 9401.80.00.의 의자에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반덤핑 관세율은 테이블 제품에 35.20%, 의자 제품에 21.40%가 적용된다.

중국산 테이블 및 의자 제품에 반덤핑 관세 적용은 2023년 2월 13일부터 5년간 유효된다.

(산업통상부의 2023년 2월 13일 제235/QD-BCT호 결정)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Trade & Customs”)

신규 규정

베트남 상공회의소 (“VCCI”)는 2023 년 1 월 1 일부터 렉스 코드 등록을 처리함

산업통상부는 노르웨이와 스위스의 일반특혜관세제도 (“GSP”)에 따라 물품 코드 (REX Code)의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처리를 VCCI에 위임하기로 한다.

VCCI는 GSP 기반 원산지 메커니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의 구현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거래자, 단체 및 개인의 GSP에 따라 물품 원산지 증명 구현을 모니터링, 독촉 및 검사한다.

(산업통상부의 2022 년 12 월 16 일 제2795/QD-BCT호 결정)

C/O 양식 B는 HS 버전 2027에 따라 여전히 발행되어 있음

산업통상부는 제31/2022/TT-BTC호 시행규칙에 발행된 베트남의 수출입 목록에 맞추기 위해 2017 HS 코드 버전에서 2022 버전으로 전환할 때 제품별 규칙의 변경을 검토중이다.

공식적인 지침이 발행되기 전에 C/O 양식 B (베트남원산지 수출품에 적용)는 제 05/2018/TT-BCT호 시행규칙에 따라 여전히 적용되며 기업이 C/O 양식 B를 신청한 시 HS 버전 2017을 여전히 적용한다.

2가지 버전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2022 HS코드 버전을 C/O 양식 B에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데 거래자가 신고된 HS 코드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산업통상부의 2023년 2월 10일 제48/XNK-XXHH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Trade & Customs”)

지침 문서

NG물품 대체 수입품은 면세 대상이 아님

수리를 위해 일시적 수출후 재수입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면세 물품의 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59/2018/NĐ-CP호 시행령 제1조 12항에 따라 신규 관세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 및 관리 정책은 최초 신고 시 이미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관세신고서 등록 시 시행된다.

일시적으로 수출된 수리 불가능한 물품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업은 제08/2015/ND-CP호 시행령 항목 5 (제59/2018/ND-CP호 시행령에서 개정됨)에 따라 일반적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를 이행해 야한다.

관세처리와 관련하여 수리를 위해 공급자에게 물품을 일시적 수출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보증을 위해 대체 신규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일시적 수출품의 재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다. 따라서 제107/2016/QH13호 수출입관세법 제16조 9항 c점에 따른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관세총국의 2023년 2월 24일 제795/TCHQ-TXNK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